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한 것으로 해석되어 운영상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감면 결정 통지가 삭제된 사항 및 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시세 감면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 과세체계사항을 반영함(안 제11조).
- 나.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12조).
- 다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지방세 ‘감면여부 결정’ 및 ‘통지’ 문구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함(안 제19조).
- 라.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의 직접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반영함(안 제2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세법」
 - 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1. 28.~2. 17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재산분·종업원분”을 “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)·종업원분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법 제74조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74조제5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조사·결정”을 “확인”으로, “통지”를 “안내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건축물”을 “건축물 및 주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<p>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(상속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가 <u>법 제74조제3항제1호</u>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)</p>	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74조제5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2. (생략) 제19조(감면신청 등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<u>조사·결정</u>하고 그 내용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</p>	<p>2. (현행과 같음) 제19조(감면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확</u> ----- <u>인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통지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24조(직접 사용의 범위) 토지에 대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<u>건축물</u>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p>	<p><u>안내</u>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직접 사용의 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건축물 및 주택</u>-----</p> <p>-----.</p>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재무국 세제과 장원중(02-2133-3357)